**기술이전계약서**

**계약명 :**

|  |  |
| --- | --- |
| **지원기관** |  |
| **전문기관** |  |
| **사업명** |  |
| **연구과제명** |  |
| **연구책임자** |  |
| **기술이전 책임자** |  |

|  |  |
| --- | --- |
| **지원기관** |  |
| **전문기관** |  |
| **사업명** |  |
| **연구과제명** |  |
| **연구책임자** |  |
| **기술이전 책임자** |  |

2020년 6월 일

**계약당사자**

**‘갑’ ‘을’**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7 주소:**

**국민대학교 내**

**기관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상호 : ATIK**

**단장 : 신 동 훈 (인) 대표 : (인)**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명:)**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甲”이라 한다)과 **ATIK** (이하 “乙”이라 한다)는 “甲”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를 국민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응용화학부 도영락 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乙”에게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기술명: ~ (이하 “~”라 한다)**

**2. 관련산업 재산권**

**\*별첨 : 기술요약서**

**3. 계약종류: 노하우 이전**

**4. 계약 기간:**

**5. 기술료:**

**가. 정액기술료 : 일금 원 정 (\부가세 별도)**

**– 계약 체결후 일내 원(\ 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

**2020년 월 일까지 원 (\ 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나.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301-231632, 예금주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1조(기술이전의 정의 및 목적)

계약은 “甲”으로 하여금 “계약주요조건”에 기재된 “~”(이하 “~”이라 한다)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기술”과 관련된 제반서류 및 노하우 모두 “乙 ”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권의 허여 및 범위)

① “甲”은 “乙”에게 “계약주요조건”에 따라 “기술”을 양도함을 허여한다.

② “乙”은 “甲”의 서면 승인없이 본 계약에 따라 허여받은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 승계, 양도 또는 재실시를 허여 할 수 있다.

제4조(“기술”의 제공)

“甲”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주요 조건에 기재된 “기술” 및 “별지1”을 “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의 개량)

① “개량기술”이라 함은, 본 계약에 해당되는 “기술”이 적용되어 발전, 개량한 “기술”로 특허나 영업비밀, 노하우, 모듈 및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② 본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된 기술을 이용한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개량기술”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甲”과 “乙”이 별도협의 하에 소유권을 정한다.

③ 5조 2항에 의거 공동소유의 할 경우 "개량기술"의 지분율은 상호 서면 동의하에 결정한다.

④ “甲”과 “乙”이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유지 비용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만약 일방이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유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甲” 또는 “乙”은 지분이 상대방에 귀속되거나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지식재산권의 확보, 유지 등에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이전의 완료)

① “乙”은 기술이전의 완료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 기간 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乙”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乙”이 이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본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항의 “기술이전의 완료”라 함은 제4조에 의거 주요 계약조건에 기재된 “기술”을 “乙”에게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

제7조(기술료 등)

① 기술료는 정액기술료로 구성된다.

② “乙”은 “계약주요조건”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甲”에 지급한다.

➂ “乙”이 제2항에 의해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8조(기술료 등의 납부방법)

①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까지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甲”은 연체 이자를 지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연체이자율은 지급당시에 “甲”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➁ 전항에 따라 “乙”이 “甲”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乙”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기술이전 참여 등의 제한)

“甲”은 “乙”이 제2조, 제11조의 위반이나 제15조 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乙”에 대하여 “甲”이 실시하는 기술이전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甲”은 계약이행 과정을 통하여 “乙”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乙” 또한 필요한 사항을 “甲”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으로부터 “기술” 양도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실시에 대하여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甲”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甲”의 요청이 있는 경우, “乙”은 “기술”과 관련된 계약사실 증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보장 등)

① “甲”과 “乙”은 상대방의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연구활동 상 또는 노하우,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국회, 감사원, 정부부처, 관리기관 등)의 자료 요구에 따라 제출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전 각항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후 X년까지 존속한다.

제12조(보증의무 면제)

① “甲”은 “기술”과 관련하여 유효성,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乙”은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甲”은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甲”은 “乙”이 “기술”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乙”의 어떠한 손해, 손상 또는 인적 상해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명칭의 사용제한)

“甲”과 “乙”은 상호 간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광고 선전, 판매촉진, 쟁송 등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쌍방 간에 제공한 기술자료,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쌍방 간의 직접적인 명칭 또는 그 소속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甲” 또는 “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5일 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제8조의 기술료 지급을 “甲”과 사전 서면 동의없이 지연하는 경우
2. “甲” 또는 “乙”이 본 계약서상의 제2조 및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3. “甲” 또는 “乙”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甲” 또는 “乙”이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4. “乙”이 “甲”과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2조의 실시범위를 확대사용한 경우

②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신청, 워크아웃 신청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乙”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 될 경우
3. “乙”(실무책임자 포함)이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4. “乙”이 “기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甲”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③ “甲”은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乙”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까지 취득한 제반자료 및 “기술”을 “甲”에 반환케 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甲”과 “乙”은 제14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제7조 제2항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청렴유지 계약)

“甲”과 “乙”은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 및 준수를 위해 쌍방의 책임자에게 청렴유지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감독한다.

제17조(주요사항의 변경)

“乙”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甲”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甲”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乙”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乙”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甲”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甲”과 “乙” 간의 모든 의견교환, 구두합의,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의 내용은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다.

제19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